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10. 17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최경분

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 성 원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9년 10월 8일

○ 회부일자: 2019년 10월 11일

3. 개정이유

- 조례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명을 「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, 안전기준 설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·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
(현행)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(변경)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
- 교육감 등의 책무 사항 신설(안 제3조)
- 적용범위 확대(안 제4조)
-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내용 추가(안 제5조)
-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
-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7조)
-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
(안 제8조)
- 용어변경
 - (현행) 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 → (변경) 안전점검(안 제9조)
 - (현행) 학교 시설물의 안전조치 → (변경) 안전조치(안 제11조)
 - (현행)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 → (변경) 유지관리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「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며, 적용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,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사항과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- 최근 들어 학교 교육환경은 학교건물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험성 뿐 아니라 석면시설물과 학교시설 내 라돈과 초미세먼지, 잦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진 발생률 등으로 인하여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
-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요하다 사료됨
-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마련 및 실행을 촉진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,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